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제1903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부담금외의 기타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2.1, 2000.12.29, 2005.8.31>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6조 (보조금심의위원회) ①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4.12.23, 1996.12.31, 1998.2.28, 1999.5.24, 2000.12.29>

1. 부·처·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1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다만, 1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2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 다만, 부교육감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장학관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기획예산처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별로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 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

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

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중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제12128호, 1987.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0호, 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 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공지구 조성	정액 보조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된 농공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부칙(재정경제원과 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 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88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265호, 1997.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 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523호, 199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30	
---	----	--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시행령) 〈제16923호,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
위탁사업 지원

부칙 〈제17057호, 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30호, 200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